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f.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왜 만들었나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혐오와 차별을 하려고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도 다양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마음을 확산할 수 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혐오를 확산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무의식적이고 관행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화다양성 침해 행위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기관 담당자, 기획자, 강사, 참여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있다면 어떨까 싶더군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홍보, 실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기획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써왔던 다양성을 훼손하는 표현 또는 행위들이 있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가 제시하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상상력과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맥락을 확장하여 더 입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돋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안내서가 복잡한 일상 현실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나 완전한 예방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그 가치가 실현되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서를 공유하는 이유는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현장에서부터 공공기관의 모든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작은 사업부터 큰 정책까지 천천히 함께 고민을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중되고 모두가 평화롭고 평등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안내서를 살펴보다 보면 아마도 우리의 질문이 매우 섬세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음을 되새겨보며 현재 가능한 일부터 함께 풀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나요?



6명의 관련 전문가들과 경기문화재단이
2년간 연속된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내외의 자료와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획서 및 신청서를 살펴보고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조사하여

1차안을 만들고,

문화기획자, 문화행정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자가 함께 고민을 더해

2차안을 구성하였고,

이를 문화예술기관 대표 및 문화예술교육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고민을 덧대고 재수정하여,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기획, 홍보, 실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안내서는 되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용해 왔던 관용적인 언어 습관, 표현 방식 그리고 사업 운영 형태 등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점검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형식으로 구성했으므로 대상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안내서에 제시된 내용은 모든 때와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규칙은 아닙니다. 또한 책에 제시된 모든 항목을 점검하더라도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모두에게 충분히 존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향후 함께 논의를 통해 완성해나가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누가 만들었나요?



경기문화재단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함께 만든 이

이완(책임), 안태호, 오혜민, 이정은, 차원, 최선영, 최준영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

강주희, 고소희, 김세연, 김영랑, 김윤정, 류선운, 문미희, 박한나, 손주애, 송경희
송하령, 신미라, 양시은, 우지연, 원종명, 이은경, 이지혜, 장현선, 천미현, 황연정

차례

| | |
|-------------------------------|----|
| 들어가기 전에 ;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 8 |
| 기관 담당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 11 |
| 기획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 21 |
| 강사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 35 |
| 참여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 43 |
|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점검표 | 49 |
| 자주 하는 질문과 답 | 61 |
| 첨부자료 | 71 |
| ① 혐오표현 | 72 |
| ② 차별에 관한 법적 정의 | 76 |
| ③ 정보접근성 | 77 |
| ④ 시설접근성 | 79 |
| ⑤ 경험접근성 | 79 |
| ⑥ 음식안내서 | 81 |
| ⑦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 82 |
| ⑧ 홍보물 예시 | 84 |
| ⑨ 문화다양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90 |
|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7가지 약속 | 93 |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 문화다양성이란?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개인과 집단은 모두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집단이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번영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르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문화다양성의 범위는 일상의 취미와 취향부터 혐오와 차별의 문제까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광범위한 범위를 모두 담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다양성을 실천하는 것 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에서는 한국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치는 가장 시급한 사항인, 타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여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 문화다양성의 법률적 정의와 목적

2001년에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을 하였고, 2005년에는 실천 규약을 담은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도 2010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¹⁾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또한 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 창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다양성의 적용 범위 제한²⁾

문화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든 표현과 행동이 다양성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없애거나 제재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적합한 일이 될 것입니다(예시: 여성 할례, 혐오표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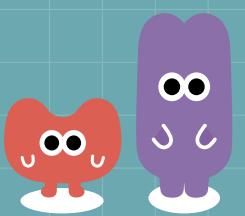
■ 사회적 소수자

한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은 이들을 말합니다. 주로 다수자에 의해 국적, 민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장애 등에 따라 구분되어 차별을 받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는 해당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참고자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령정보센터)

2) 참고자료: UNESCO 문화다양성 선언, 문화다양성 협약, UN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1호

기관 담당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기관 담당자란 지역 문화재단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8



:: 기획 단계

- 1 공고문, 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양식의 목차, 내용, 작성 기준, 예시 등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합니다.
- 2 공고문, 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양식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개인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홍보 단계

- 4 기획자(단체, 기관 등)가 홍보물,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5 공고문, 홍보물, 홍보 방법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6 공고문, 홍보물에 쓰이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실행 단계

- 7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예시(언어·종교·음식 등 문화적 차이 관련 사례, 성차별·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예시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평가 단계

- 8 사업의 기획, 공고, 실행의 전 과정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다음 기획에 반영합니다.
- 9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기획 단계

1. 공고문, 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양식의 목차, 내용, 작성 기준, 예시 등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의 정보 기입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의 정보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예시: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을 위한 경우)에만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정한 사람이나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나 혐오표현에 해당되는 단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단어라도 시대와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첨부자료 1. 혐오표현 부분 참고(p.72)



2. 공고문, 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양식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공고, 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보접근성이란 ‘모든 사용자가 특정 환경이나 신체적 장애에 상관없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에 대한 모든 콘텐츠는 장애, 연령에 상관없이 인식되고,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첨부자료 3. 정보접근성·웹접근성 지침 참고(p.77)

◎사업설명회 및 참고자료 등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반복되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자료 7.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참고(p.82)

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개인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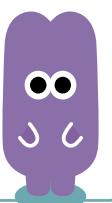
◎사업설명회 및 참고자료 등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시작 부분에 있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설명글을 참고하세요.(p.8)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da.or.kr)에서도 많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및 참고자료 등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차별, 혐오표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용어나 시각적 이미지 등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홍보 단계

4. 기획자(단체, 기관 등)가 홍보물 또는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제공하고 기획자(단체, 기관 등)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안내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f.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서와 함께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에 문의해주세요 좋습니다.

5. 공고문, 홍보물, 홍보 방법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신청할 사람들(기획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사업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주민, 아동,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향하거나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집단별 생활 형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과 언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홍보물이 게시된 곳(온·오프라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기관 홈페이지, SNS 등 웹사이트뿐 아니라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하여 오프라인의 다양한 곳에 홍보물을 게시합니다.

6. 공고문, 홍보물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미지 등 표현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에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다음의 용어들이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다문화/소외계층/취약계층/소외지역 등).
'다문화 아동,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등의 표현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참여자들을 분리하고 구분 짓게 하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 취약계층, 소외지역 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고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8. 홍보물 예시 참고(p.84)

◎혐오표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같은 단어라도 시대와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첨부자료 1. 혐오표현 부분 참고(p.72)

◎홍보물에 포함된 이미지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어휘뿐 아니라 활용되는 이미지가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정상가족', '고정된 성역할' 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그 외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화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표현되지 않아서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첨부자료 8. 홍보물 예시 참고(p.84)



실행 단계

7.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더 불어, 표현의 다양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혐오표현의 예시를 보고자 한다면 관련된 내용을 제공합니다. (예시: 언어, 종교, 음식 등 문화적 차이 관련 사례, 성차별·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일상에서 혐오표현 등의 사용으로 다양성이 억압되고 왜곡되는 사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혐오표현에 의해 억눌리지 않고 발현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예시를 제공합니다.

*첨부자료 1. 혐오표현 부분 참고(p.72)



평가 단계

8. 사업의 기획, 공고, 실행의 전 과정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다음 기획에 반영합니다.

◎사업 전 과정에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문화다양성 안내서〉를 사업 공모 공고와 함께 배포하고,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안내서의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를 취합 및 정리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합니다.

▶평가는 각 단체가 가지는 부담과 허위 작성의 우려를 고려하여 무기명으로 진행 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취합 및 정리 역시 통계만을 작성하여 전체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 기획과 공고 시행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기관의 사업 진행 과정 역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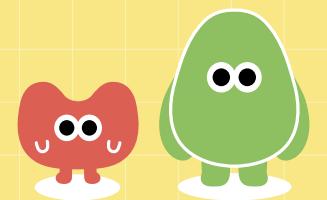
9.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기관 및 기관 담당자의 경우 단체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기획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기획 단계

- 1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장소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3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사람들(기획자, 강사 등)과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홍보 단계

- 4 홍보물, 홍보 방법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5 홍보물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미지 등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행 단계

- 6 사진, 영상 등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 7 프로그램 운영 중 중간 점검 시간을 가지고,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평가 단계

- 8 프로그램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를 찾고 다음 기획 및 홍보 과정에 반영합니다.
- 9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럴 경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확인해봅니다.
- 10 보고서, 자료집 등 사업 결과물에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혹은 편견을 야기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 11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기획 단계

1.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거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예외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와 모집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거나 시혜적 차원의 대상화는 지양해야 합니다.
- ▶ 프로그램의 제목 혹은 내용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지칭하고 있다면 목적인지 혹은 꼭 필요한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사회적 소수자’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성별, 나이, 장애,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 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 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기획 내용에 혐오표현에 해당되는 단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혐오표현은 혐오를 조장하는 특정한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이나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이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자의 경우 일상에서 이미 사용하는 단어 중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특정 집단 혹은 대상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인식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 1. 혐오표현 참고(p.72)

2.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장소는 시설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위치와 장소가 시설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접근성이란 ‘누구나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설의 접근과 이용의 정도(수준)를 말합니다. 시설접근성의 확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시설에 접근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사로,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간 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키오스크’와 같은 이용 시설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시설접근성’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 4. 시설접근성 참고(p.79)

◎시설접근성의 문제는 경험접근성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험접근성이란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타인과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전반의 자격을 갖춘 성질’을 의미합니다.

▶ 경험접근성의 개념은 시설접근성의 문제 중심이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아니라 ‘인간(장애인)의 권리’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무 이전에,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사로와 엘리베이터의 유무보다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태도, 활동지원인과 협력하려는 자세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5. 경험접근성 참고(p.79)

3.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사람들(기획자, 강사 등)과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프로그램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거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강화에 대한 고민, 혐오표현에 대한 확인 등 기획 단계에서 고려한 문화다양성의 관점에 대해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봅니다.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논의합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처음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과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 7.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참고(p.82)



홍보 단계

4. 홍보물, 홍보 방법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장애/연령/언어/정보 격차 등)을 고려하여 홍보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연령, 언어, 정보 격차에 의해 홍보물 접근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경의 경우 모든 사용자가 특정 환경이나 신체적 장애 등에 상관 없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보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첨부자료 3. 정보접근성 참고(p.77)

◎홍보물이 게시된 곳(온·오프라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하여 오프라인의 다양한 곳에 홍보물을 게시합니다. 필요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공 홍보물, 소식지, 게시판 등에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5. 홍보물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미지 등 표현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에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용어들이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문화/소외계층/취약계층/소외지역 등.

▶예를 들어 ‘다문화 아동,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등의 표현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참여자들을 분리하고 구분 짓게 하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 취약계층, 소외지역 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고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8. 홍보물 예시 참고(p.84)

◎혐오표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혐오표현은 혐오를 조장하는 특정한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이나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이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자의 경우 일상에서 이미 사용하는 단어 중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특정 집단 혹은 대상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인식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 1. 혐오표현 참고(p.72)



실행 단계

◎홍보물에 포함된 이미지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어휘뿐 아니라 활용되는 이미지가 획일적이라면 편견을 강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정상가족’, ‘고정된 성역할’ 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그 외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화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진, 영상 등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진, 영상 등은 기록 전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촬영을 원하지 않는 참여자들을 위해 촬영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리본, 스티커, 팻말 등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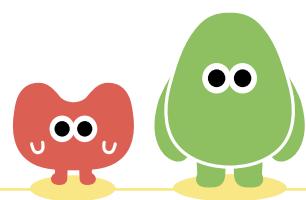
7. 프로그램 운영 중 중간 점검 시간을 가지고,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중간 점검 시간이 기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차별/혐오표현 등의 상황이 생긴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평가해보거나, 이미 지나쳤지만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평가할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후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 단계

8. 프로그램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를 찾고 다음 기획 및 홍보 과정에 반영합니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불필요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의 정보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예시: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을 위한 경우)에만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그램에 특정 집단이 불필요하게 한정된 경우 이유를 분석하고 다음 기획 과정에 반영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시간과 장소, 홍보 방법, 프로그램의 내용 등의 이유가 확인된다면 다음 기획 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 및 보완합니다.

9.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확인해봅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내용이 준수되었는지 자체 점검합니다.

▶강사, 참여자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와 기획자가 모두 참여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가운데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문화다양성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기록하고 사례로 남겼는지를 확인합니다.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후 관련한 진행 과정과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기록하고 사례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0. 보고서, 자료집 등 사업 결과물에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부정적으로 부각 시키거나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홍보 및 결과자료집 등에서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 표현은 물론이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소수집단을 강조하는 표현이 오히려 배제나 낙인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업결과물이 최종 인쇄·제작된 이후라도, 추가 설명문 등으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한 내용은 이후 사업 수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11.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강사와 기획자가 모두 참여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가운데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강사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문화예술교육 강사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실행 단계

1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과 함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만듭니다.

2

수업에 쓰이는 언어 표현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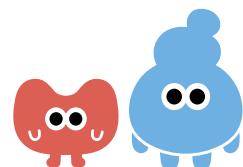
종교, 식문화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평가 단계

4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과정을 돌아봅니다. 이 과정은 가급적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실행 단계

1.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과 함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만듭니다.

◎ 혐오표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인지 확인합니다. 참여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의 정의를 내려보고, 각각의 사례가 혐오표현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거나 참여자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 첨부자료 1. 혐오표현 참고(p.72)

◎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을 이유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 이전의 교육 경험에서 있었던 사례를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여자와 강사 모두에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과정이 됩니다.

◎ 문제 발생 시 대처법을 만들어봅니다.

▶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특정한 신호 만들어보기 등 참가자들과 함께 대처법을 만들어봅니다.

※ 첨부자료 7.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참고(p.82)

2. 수업에 쓰이는 언어표현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수업 중에 사용되는 각종 표현 속에 다양한 성정체성을 고려한 표현을 쓰도록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을 좋아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OO이는 OO을 좋아하는구나’ 등의 표현을 피합니다.

◎수업 중에 출신 국가, 성, 장애, 연령, 종교, 음식, 문화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나 고정된 성역할을 의미하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합니다.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역시 고정관념을 강화하므로 이 또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가’, ‘OO나라 사람들은’ 등

◎외모, 옷차림 등에 대한 표현을 지양합니다.

▶칭찬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는 말하는 사람의 지위나 선입견이 반영된 평가 기준이 드러나곤 합니다. 평가의 시선과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 상대방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혹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생소한 발음,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웃거나 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종교, 식문화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종교식 또는 채식 등을 하는 참여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음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첨부자료 6. 음식 안내서 참고(p.81)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공하는 음식의 알레르기 정보를 미리 고지합니다.

▶알레르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상대에게 ‘예민하다’ 혹은 ‘까탈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된다면 당사자에게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해주세요.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에 따른 행동 패턴 및 옷차림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유의합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설ぶ른 판단이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를 이유로 누군가의 행동이나 옷차림, 말투 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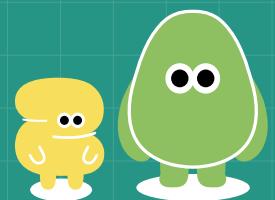
평가 단계

4.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과정을 돌아봅니다. 이 과정은 가급적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참여자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준수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시간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들과 전체 프로그램을 회고·평가하는 과정을 갖도록 합시다.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화다양성 측면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 ◎위와 관련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사례를 기획자 및 관련자와 공유합니다.
 - ▶기획자 한 명이 프로그램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읽어내고 혼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인식한 관점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참여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이번 안내서의 참여자란 기획자와 강사를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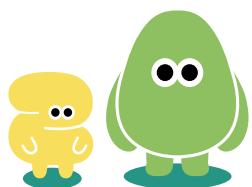
:: 실행 단계

- 1 문화다양성의 관점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만듭니다.
- 2 혐오표현이나 특정한 집단을 차이로 인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솔직하게 의견을 제기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해결해나갑니다.



:: 평가 단계

- 3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실행 단계

1. 문화다양성의 관점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만듭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자 간에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7가지 약속> (p.93)을 함께 읽어보고, 이와 관련한 규칙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항목이 다 지켜지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전에 함께 약속을 만들어보았다는 사실 자체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차별과 불평등을 묵인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약속한 내용은 종이에 적어 활동 공간에 부착해두거나, 프린터로 인쇄해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혐오표현이나 특정한 집단을 차이로 인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솔직하게 의견을 제기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해결해나갑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한 혐오표현이 있다면 이를 묵인하지 말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전에 규칙을 만들었다면 규칙에 따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규칙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문화다양성을 저해하는 말이나 행동이 발생했다면 가감 없이 공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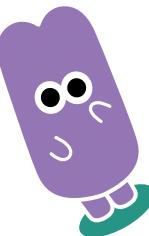
평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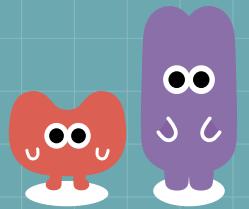
3.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되어 논의할 만한 일이 있다면 다른 참가자 및 관계자들과 공유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되짚어볼 때 의미가 있거나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적극 공유합니다. 꼭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함께 논의합니다.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점검표



1. 기관 담당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점검표

● 기획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 | 공고문, 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양식의 목차, 내용, 작성 기준, 예시 등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합니다. | | | | |
| 1 | 1-1 |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의 정보 기입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 | | |
| | 1-2 | 특정한 사람이나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 할 수 있는 내용이나 혐오표현에 해당되는 단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2 | | 공고문, 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양식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 | |
| | 2-1 |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공고, 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 | | |
| |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개인에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3 | 3-1 | 사업설명회 및 참고자료 등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3-2 | 사업설명회 및 참고자료 등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차별, 혐오표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3-3 | 사업설명회 및 참고자료 등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 |

● 홍보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 | 기획자(단체, 기관 등)가 홍보물 또는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 | | |
| 1 | 1-1 | 안내서를 제공하고 기획자(단체, 기관 등)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 | |
| | | 공고문, 홍보물, 홍보 방법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 | |
| 2 | 2-1 | 사업에 신청할 사람들(기획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 | |
| | 2-2 | 홍보물이 게시된 곳(온·오프라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 | |
| | | 공고문, 홍보물에 쓰이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 | | |
| 3 | 3-1 | 홍보물에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 | |
| | 3-2 | 혐오표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3-3 | 홍보물에 포함된 이미지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2.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점검표

● 실행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1 | |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표현의 다양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혐오표현의 예시를 보고자 한다면 관련 내용을 제공합니다. (예시: 언어·종교·음식 등 문화적 차이 관련 사례, 성차별·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등)를 내용을 제공합니다. | | | | |
| | 1-1 | 일상에서 혐오표현 등의 사용으로 다양성이 억압되고 왜곡되는 사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혐오표현에 의해 억눌리지 않고 발현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예시를 제공합니다. | | | | |

● 평가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1 | | 사업의 기획, 공고, 실행의 전 과정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다음 기획에 반영합니다. | | | | |
| | 1-1 |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 | | | |
| 2 | |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 | | | |
| | 2-1 |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 | | |

● 기획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 |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 1 | 1-1 |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거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1 | 1-2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1-3 | 기획 내용에 혐오표현에 해당되는 단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장소는 시설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 | | |
| 2 | 2-1 |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위치와 장소가 시설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2-2 | 시설접근성의 문제는 경험접근성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
| | |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사람들(기획자, 강사 등)과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 | | |
| 3 | 3-1 | 프로그램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3-2 |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논의합니다. | | | | |

● 홍보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 | 홍보물, 홍보 방법 등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 | |
| 1 | 1-1 |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장애/연령/언어/정보 격차 등)을 고려하여 홍보합니다. | | | | |
| | 1-2 | 홍보물이 게시된 곳(온·오프라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 | |
| | | 홍보물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미지 등 표현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 | | |
| 2 | 2-1 | 홍보물에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 | |
| | 2-2 | 혐오표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2-3 | 홍보물에 포함된 이미지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실행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1 | | 사진, 영상 등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 | | | |
| 2 | 1-1 | 사진, 영상 등은 기록 전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 | | | |
| | | 프로그램 중간 점검 시간을 갖고,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 | | | |
| 2 | 2-1 | 중간 점검 시간이 기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2-2 |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 | | | |

● 평가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 | 프로그램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를 찾고 다음 기획·홍보 과정에 반영합니다. | | | | |
| 1 | 1-1 |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불필요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1-2 | 프로그램에 특정 집단이 불필요하게 한정된 경우 이유를 분석하고 다음 기획·과정에 반영합니다. | | | | |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확인해봅니다. | | | | |
| 2 | 2-1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내용이 준수되었는지 자체 점검합니다. 강사, 참여자와 함께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 | | |
| | 2-2 |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기록하고 사례로 남겼는지를 확인합니다. | | | | |
| | | 보고서, 자료집 등 사업 결과물에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3 | 3-1 | 사업과 관련한 각종 홍보 및 결과자료집 등에서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 |
| | 3-2 | 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 | | |
| 4 | |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 | | | |
| | 4-1 |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 | | |

3.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점검표

● 실행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만듭니다. | | | | |
| | 1-1 | 혐오표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 | | |
| 1 | 1-2 |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국가 등을 이유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 | | | |
| | 1-3 | 문제 발생 시 대처법을 함께 만들어봅니다. (예시: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특정한 신호를 만들어보기 등) | | | | |
| | | 수업에 쓰이는 언어표현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 | | | |
| 2 | 2-1 | 수업 중에 사용되는 각종 표현 속에 다양한 성정체성을 고려한 표현을 쓰도록 점검합니다. (예시: 이성을 좋아할 것이라는 단정, 'OO이는 OO을 좋아하는 구나' 등의 표현을 피합니다.) | | | | |
| | 2-2 | 수업 중에 출신 국가, 성, 장애, 연령, 종교, 음식, 문화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나 고정된 성역할을 의미하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합니다.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역시 고정관념을 강화하므로 이 또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예시: '남자가', '여자가', 'OO나라 사람들은' 등) | | | | |

4.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점검표

● 실행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2 | 2-3 | 외모, 옷차림 등에 대한 표현을 지양합니다. | | | | |
| | 2-4 |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혹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를 수 있게 합니다. | | | | |
| | | 종교, 식문화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 | | |
| 3 | 3-1 | 사전에 종교식 또는 채식 등을 하는 참여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 | | |
| | 3-2 |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공하는 음식의 알레르기 정보를 미리 고지합니다. | | | | |
| | 3-3 | 종교에 따른 행동 패턴 및 옷차림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유의합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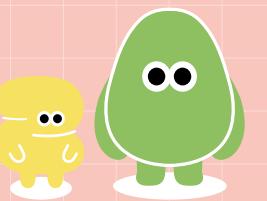
● 평가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1 | |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과정을 돌아 봅니다. 이 과정은 가급적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 | | | |
| | 1-1 |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참여자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 | | | |
| | 1-2 | 위와 관련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사례를 기획자 및 관련자와 공유합니다. | | | | |

● 평가 단계

| 구분 | 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 |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보완필요 |
| 1 | |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 | | | |
| | 1-1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 할 만한 일이 있다면 다른 참여자 및 관계자들과 공유 합니다. | | | | |

자주 하는 질문과 답





‘다문화’ 등 부적절한 말을 대체할 단어는 없나요?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문화’는 가치중립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문화’라는 단어를 국제결혼가족이나, 그 가족의 자녀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전달됩니다.

이를 듣는 상대방도 많은 경우 모멸감을 호소합니다. 또한 이를 사람과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두 집단 간 차이를 강조하고 분리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법률 용어이며 행정 용어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해야겠습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구분해 부를 필요가 거의 없으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나 관련한 정체성을 가진 가족이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과 교통약자 를 위한 시설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기획자나 강사 몇 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을 잠시 대관했거나 임대한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지요.

본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그런 어려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교육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아예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거나, 참여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설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기획 단계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및 보조 인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시설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공지하거나 그래서 장애인과 교통약자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일부 일정을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보조 인력이 이들의 공간 출입을 도울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봐야 하겠지요.



특정한 대상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대상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특별한 공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판단해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운영 방식이 특정한 대상을 본래부터 목적한 것이라면 의도에 부합하는 대상과 함께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정말 이 대상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대상과 진행 과정, 결과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대상을 다른 사람과 구분, 분리, 고립시키거나 역차별로 인한 편견을 심화하게 될 우려는 없는지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더 다양한 예시나 단어를 제시해줄 수 있나요?



혐오표현은 혐오를 조장하는 특정한 단어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이 혐오를 조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혐오를 조장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변용되어 나타나는 실정이라 이를 일일이 찾아내 알아두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표현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겠지요.

무엇보다 일상에서 이미 사용하는 단어 중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에도 부록으로 기존의 혐오표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선정한 혐오표현의 일부를 수록하였습니다.



결과보고나 기획서 작성 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특정 계층을 분리해 작성한 행정적인 통계가 오히려 참여자를 대상화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활동이든지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산뿐 아니라 여러 자원의 사용 범위를 예측하거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여러 가지 사회적 잣대로 분리하여 그 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더 적절한 자원 분배와 의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협약에서도 필요한 경우 정확하게 정리된 통계 작성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분된 통계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만족도 조사용 각종 설문지를 비롯해 많은 조사에서 참여자의 개인적인, 또는 여러 경제사회적 상황을 묻고 답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 자체가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계와 결과 작성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결과가 구분과 분리로 인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상을 필요에 따라 경제사회적 환경으로 분리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꼭 필요한 통계인지, 통계 작성은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오표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한데 꼭 써야 하나요?



혐오표현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영미권에서는 ‘Hate Speech’라고 부르며, 한국에서는 이를 증오표현 또는 증오발언으로 해석해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리포트를 통해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②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도 문제시되지만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정 또는 폄하하거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등 역사 부정 표현도 혐오표현에 속합니다.

혐오표현이 특히나 문제시되는 것은 그 해악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변호사 모로오카 유스코는 자신의 책 <증오하는 입>에서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는 주로 재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영혼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혐오표현은 누군가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에 그치지 않고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 이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시작 단계에서는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중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해치고 파괴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해악을 가진 혐오표현을 방지하고자 많은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은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을 이해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혐오표현을 이해하고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 안내서>가 자칫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거나 기획자 및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상상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검열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안내서의 내용을 접하는 일부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어디에서부터 연유하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타인을 대상화하거나 차별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껏 용인되어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예제를 포함한 신분제, 극심한 흑인 차별, 여성 참정권 등의 이슈를 생각해보면 인권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들도 단기간에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지만, 차별 없고 조화로운 세계를 위해 인류가 만들어온 뚜렷한 발자국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기획자나 예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도 안내서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이름이 차별과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 역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상상력을 억압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맥락을 확장하여 더 입체적이고 풍요로운 활동을 돋기 위해 제작한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적용하려 할 때 막막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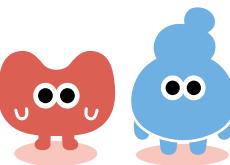


모든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모두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안내서에서 확인되는 문제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단체나 개인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특정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상상하는 데 막막함이 있다면 각 분야별 전문가나 활동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적용을 당장 기대하거나 목적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현재 가능한 사항부터 하나씩 고민하고 실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에 보다 자세한 내용과 예시가 수록돼 있으니 관심이 가는 사항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질문을 만드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 질문에 따라 책이나 영상 자료를 검색해보거나 주변 사람

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자신만의 관점이나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당장 안내서의 내용을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질문을 정리해보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을 겁니다. 혹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의 의미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테고요. 이 안내서는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목적이 크니 많은 내용의 적용보다는 작은 단위의 자기 실천을 하나씩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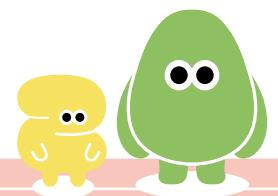
문화다양성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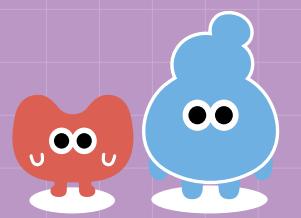
〈문화다양성 안내서〉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니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문화다양성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할 가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가 발표한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적 연대와 활동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주요 의제로 천명하였으며 ‘무지개다리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da.or.kr)에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부 차원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부록 편에 다양한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함께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혐오표현

■ 혐오표현의 개념과 문제점

-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및 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을 하거나 차별 및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합니다.
-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적 토론의 장을 왜곡하여 다양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차별적 사회구조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해치게 됩니다.

■ 혐오표현에는 몸짓, 기호, 그림 등도 포함¹⁾

-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에 관한 부정적 생각이나 편견을 담고 있는 모든 표현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몸짓과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침묵 등의 행위, 기호, 그림 등도 포함됩니다.
- 세월호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인 행위, 브라질 축구선수를 원숭이로 비하해 바나나를 던진 유럽 관중의 행위는 대표적인 혐오표현입니다. 혐오표현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에서 나오지만 “장애인은 착하다”, “흑인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 등의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당사자들에게는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욕형 혐오표현, 선동형 혐오표현

- 혐오표현은 특정 단어로만 인식할 수 없으며 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오표현은 크게 모욕감을 주는 모욕형 혐오표현과 차별을 부추기는 선동형 혐오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형태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모욕형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을 부정적 이미지로 일반화하는 것으로 주로, 성별, 나이, 인종이나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예시: 김치녀, 꿩꽝이, 급식충, 짱깨, 똥남아, 흑형, 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다(비하의 맥락에서), 게이 같다 등

- 선동형 혐오표현은 편견에 근거해서 특정 집단의 적대심을 부추기는 표현입니다.

※예시: ‘여성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성소수자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등

■ 혐오 대상과 표현²⁾

| 구분 | 혐오 대상 | 혐오표현 | 혐오 형태 |
|--------|---------|------------------|---|
| 선천적 요인 | 남성 | 한남충, 한남유충 |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려는 구시대적인 한국 남성을 포괄하여 비난 |
| | 여성 | 꼴페미, 워마드 | 여성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거부감 |
| | 노인 | 틀딱 | 구시대적인 인식과 행동에 대한 멸시 |
| | 외국인, 인종 | 짱깨, 쪽바리, 똥남아, 외노 |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 |
| | 출신 지역 | 전라도언, 개쌍도, 명성도 |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 |
| 후천적 요인 | 성소수자 | 똥꼬충 | 동성애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 |
| | 장애인 | 애자 | 신체적 장애를 웃음거리로 여기며 비하 |
| | 엄마 | 맘충 | 자기 자녀만 쟁기는 엄마를 별레에 비유 |
| | 초종교교생 | 급식충 | 철없는 행동에 대한 무시와 인격적 멸시 |
| | 채식주의자 | 채식충 | 채식에 대한 고집스러움을 포함한 비난 |
| | 대학 훌리건 | 지잡대 |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고 경쟁 학교를 깎아내리고 헐뜯음 |
| | 정치 | 좌빨, 수구꼴통 |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 |
| | 종교 | 개독 | 종교적 맹신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비난 |

1) 참고자료: 혐오표현 리포트(국가인권위원회 2019)

2) 출처: 서울신문 2018. 10. 14. [혐오 허무는 사람들] 혐오 대상과 표현들/ 일부 표현 수정



■ 교실 속 혐오표현³⁾

| 구분 | 혐오표현 |
|----------|---|
| 여성 | 쿵쾅쿵쾅, 페미나치(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미국 극우파 용어), 김치녀 |
| 엄마 | 느금마, 니애미, 애미 터졌다, 앰창, 맘충 |
| 남성 | 한남, 한남콘, 쫓팔게(뚱뚱한 남성을 비하하는 말) |
| 외모 | 빨다(못생겼다), 쿵쾅이(뚱뚱한 여자를 지칭) 파오후(뚱뚱한 사람이 숨 쉬는 모습을 흉내 낸 말) |
| 인종 | 흑형, 니거, 용병(흑인), 파퀴벌레(파키스탄인) |
| 성소수자 | 똥꼬총, 게이새끼, 보추(트랜스젠더 비하) |
| 특정 직업 비하 | 치안조무사, 교사조무사 |
| 기타 | 앙 기모띠, 씹선비·진지총(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대상을 놀리는 말), 급식총 |

| 성차별 언어(바꾸고 싶은 말) | 성평등 언어(쓰고 싶은 말) |
|---|--|
| 유모차(乳母車) | 유아차(乳兒車) |
| → 의미: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 →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함 |
| 그녀(女) | 그 |
| → 의미: 주로 글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여자를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 ‘그’를 사용 상황과 문맥에 따라 ‘그 여자’ 등 사용 |
| 저출산(低出山) | 저출생(低出生) |
| → 의미: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 | → ‘저출산 문제’ 등을 표현할 때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저출생’ 사용 |
| 미혼(未婚) | 비혼(非婚) |
| → 의미: 아직 결혼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 | →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사용 |
| 자궁(子宮) | 포궁(胞宮) |
| → 의미: 여성의 정관의 일부가 발달하여 된 것으로 태아가 착상하여 자라는 기관 | → 특정 성별이 아니라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 |
| 몰래카메라 | 불법촬영 |
| → 의미: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 | →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대신 범죄임이 명확한 ‘불법촬영’으로 지칭 |
| 리ベン지 포르노(revenge pornography) | 디지털 성범죄 |
| → 의미: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 → 심각한 범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용어 사용 |

■ 서울특별시 성평등 언어⁴⁾

| 성차별 언어(바꾸고 싶은 말) | 성평등 언어(쓰고 싶은 말) |
|--|--|
|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 | → 직업 등에 붙이는 ‘여’ 자 빼기 예시: 의사, 배우, 직원, 교수, 작가, 비서, 군인 등 |
| → 의미: 직업 등에 ‘여’를 붙이는 것 예시: 여의사, 여배우, 여직원, 여교수, 여류작가 | |
|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 |
| → 의미: 여자에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학교 | → 남자고등학교처럼 ‘여자’를 빼고 명칭 하기 |
| 처녀 | 첫 |
| → 의미: 일이나 행동 등을 처음으로 한다는 의미 로 앞에 ‘처녀’를 붙이는 것 예시: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 → 행동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사용 예시: 첫 작품, 첫 출판, 첫 출전, 첫 비행, |

3) 출처: 경향신문 2017. 10. 1. [‘엄마’를 욕하며 노는 아이들…교실이 ‘혐오의 배양지’가 되었다]

4)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차별에 관한 법적 정의

‘차별’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응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3. 정보접근성

정보접근성, 웹접근성은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접근성에 대해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주요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⁵⁾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국내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운영하는 ‘이음 온라인’이 있습니다.⁶⁾

여기에서 안내된 정보접근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

시각장애를 고려하여 비디오 콘텐츠 내용 중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라이브 영상의 경우 무대, 세트, 소품, 의상 및 출연자의 얼굴 표정,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시각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 수어해설(Sign Language)

청각장애를 고려하여 소리가 아닌 손짓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정보입니다. 언어의 전달 방식은 손, 몸, 얼굴 및 머리의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한국 수어(KSL)는 한

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https://www.wah.or.kr:444/Participation/guide.asp>
네이버 접근성 가이드 <https://accessibility.naver.com/accessibility>
넷플릭스 접근성 가이드 <https://help.netflix.com/ko/node/116022>

6) 이음 온라인 <https://www.ieum.or.kr>

국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의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 큰 활자(Large Print)

시각장애를 고려하여 활자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 약시나 시력이 저하된 분들을 고려한 접근 환경입니다.

○ 자막(Captioning)

청각장애를 고려하여 비디오 콘텐츠의 대화, 설명 등의 음성을 글자로 변환한 정보입니다. 자막은 청각장애인의 접근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비장애인(학생이나 외국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쉬운 내용(Easy Read)

발달장애를 고려하여 쉬운 단어, 쉬운 표현, 짧은 문장 및 쉬운 그림을 포함한 문서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여 문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입니다.

○ 대본(Text)

청각장애를 고려하여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의 내용을 별도의 텍스트로 전환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휠체어 접근

휠체어가 접근 및 진입 가능한 장소입니다.

○ 문자통역

청각장애를 고려하여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4. 시설접근성⁷⁾

시설접근성이란 특정 공간이나 건축물에 사람이 입장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약자’와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와 ‘이동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경험접근성

경험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타인과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전반의 자격을 갖춘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울문화재단의 ‘201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 방안 연구’(짓거리연구소)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화되었습니다. 정보접근성과 시설접근성의 개념을 포함하며 보다 일상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실현 가능한 개념이지만 인간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출처: 이동권 및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UD환경팀, 2019)



일반적으로는 장애인이 예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문화공간에 접근 가능한지 차원으로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정보접근성, 시설접근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경험 기회가 적은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공교육, 사교육,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접한 후 자신의 생활에서 상상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선택,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강력하고 획일화된 지원 모델의 개발보다는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제시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및 복지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⁸⁾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나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무언가를 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 인력을 상시 배치하거나 활동지원인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일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경험접근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음식안내서⁹⁾

1) 채식주의 유형 안내

| 채식주의 유형 | 설명 |
|---------------------------------------|---|
| 비건 (Vegan) | 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 |
| 락토 베지테리언 (Lacto vegetarian) | 유제품은 먹는 경우 |
| 오보 베지테리언 (Ovo vegetarian) |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 |
|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Lacto-ovo vegetarian) | 유제품과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 |
| 페스코 베지테리언 (Pesco-vegetarian) | 유제품,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까지는 먹는 경우 |
| 폴로 베지테리언 (Pollo-vegetarian) | 유제품,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 조류의 고기까지는 먹는 경우 |
|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 평소에는 비건(vegan),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하는 경우 |

2) 종교식 안내

| 종교식 | 설명 |
|------------------------------|--|
| 힌두교식 (Hindu Meal) | 소고기, 돼지고기, 훈제된 생선 및 생선회를 금한다. |
| 유대교식 (Kosher Meal) | 코셔 규칙과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인증한 식품을 섭취한다. 소와 양, 염소 등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는데, 이 역시 규칙에 따라 조리되어야 한다. |
| 이슬람교식 (Moslem Meal/Halal) |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을 먹고, 돼지고기와 술은 금한다. |

8) 201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 방안 연구(짓거리연구소) p.69

프로그램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도시락을 주문하였는데, 한 학생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라고 대답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이유를 알고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이슬람교 신자였습니다. 처음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식사를 해야 할 때 참여자들에게 미리 물어보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의합니다. 흔히 간식으로 김밥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햄을 뺀 김밥을 따로 주문합니다. 참고로 종교식뿐 아니라 최근에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메뉴를 개발·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7. 차별, 혐오표현 발생 시 대처 방안

가장 좋은 방식은 혐오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0년 발표된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orea Theatre Standards, KTS)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아이고!”라고 외치면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를 포함하여 상황을 인지한 누군가가 이 말을 받아 “이런!”을 외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

신호를 시작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불편 상황을 공유하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반드시 음성언어를 쓸 필요는 없으며, 몸동작이나 조명 등을 활용한 비음성언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위험이나 불편함을 알리는 행위인 만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벼운 어조를 사용하면서 농담, 비하, 괴롭힘의 이유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런’ 외에도 참여자들과 함께 나름의 신호를 정해보세요(KTS 워킹그룹, 2020: 28).¹⁰⁾

혐오표현은 발화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나 위치 및 지위, 발생 장소, 사회적 맥락, 범위, 그 의도와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도 그 해악과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내부적인, 자율적인 노력으로 그 해결과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련한 기관, 청소년·노동·인권 등 단체나 전문가에게 조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 출처: 참고문헌 KBS, “[글로벌24] 저커버그도 찾는 ‘코셔푸드’ 뭐길래?”, 2016. 11. 08.

<http://mn.kbs.co.kr/news/view.do?ncd=3374642>

채식이야기, “채식인 또는 채식주의자의 7가지 유형”,

<https://veganstory.com/27>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종교식부터 과일식까지, 특별한 기내식”,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cienews&logNo=220650033017&proxyReferer=https%3A%2Fwww.google.com%2F>

10) 참고문헌: KTS 워킹그룹(2020),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orea Theatre Standards, KTS),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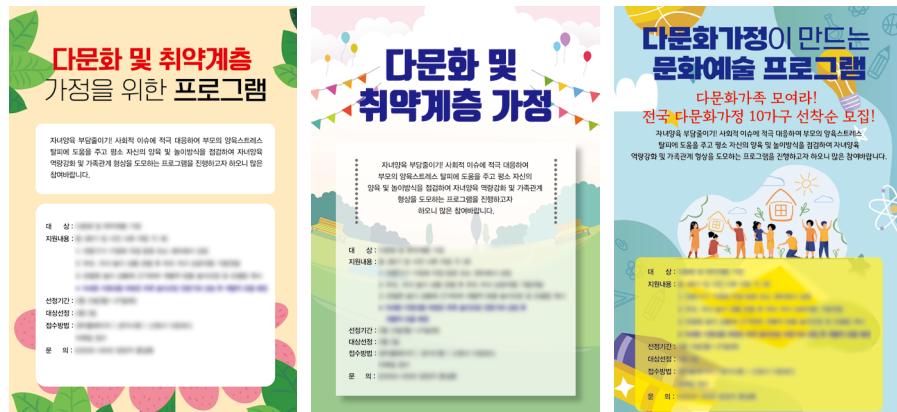


8. 홍보물 예시

홍보물을 디자인 및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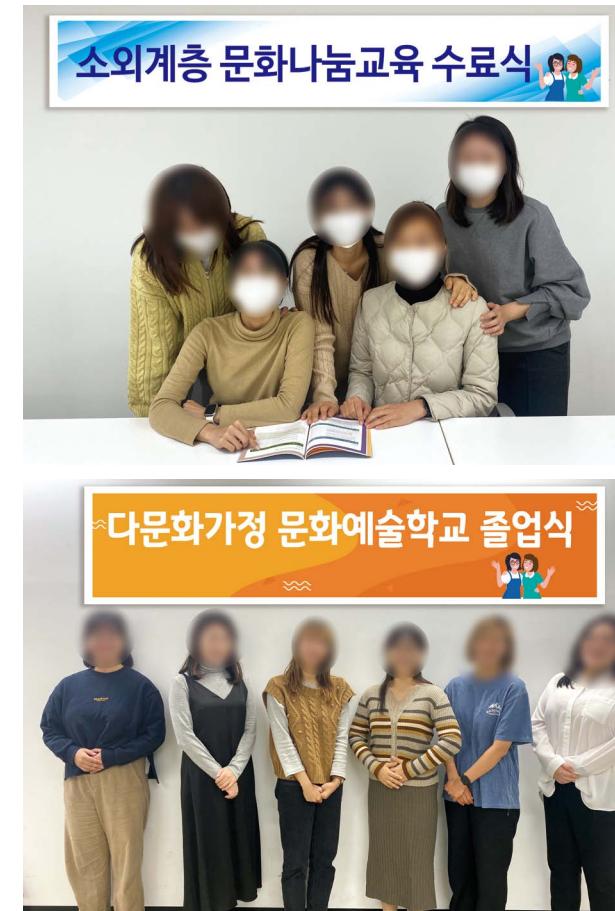
먼저 ‘다문화,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의 참여자를 대상화하고 낙인하는 용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특정 대상으로 구분하는 일은 그 자체로 분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참여 대상을 특정하여 진행한 프로그램의 홍보 예시입니다.

1)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다문화,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으로 제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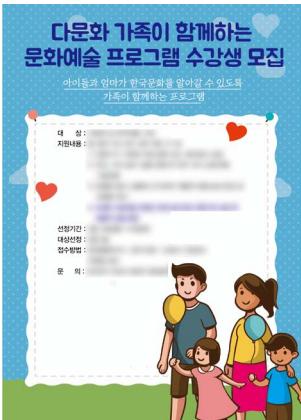
2)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집단화하고 낙인찍는 표현을 쓰는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 현수막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홍보물에 참여자들을 낙인찍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 사진이 홍보 수단으로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될 때가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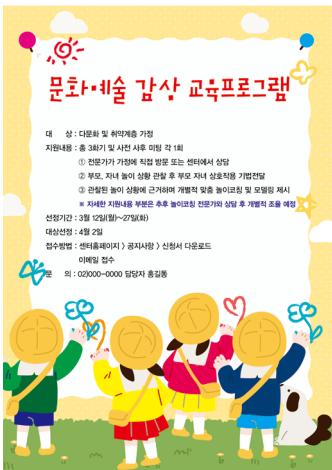
3) ‘다문화가족’을 고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경우

- ‘다문화가족’ = 한국인 남성 +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 여성과 남성의 옷차림에서 ‘고정화된 성역할’이 드러나고, 외모 또한 성별에 따른 ‘~다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바지를 입은 남성(아빠와 아들)
 - 치마를 입은 여성(엄마와 딸)
- 한국문학과 인문학에 대한 강좌의 참여자를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4) ‘성역할(이미지)’- 어린이 프로그램, 참여형 프로그램 대상 모집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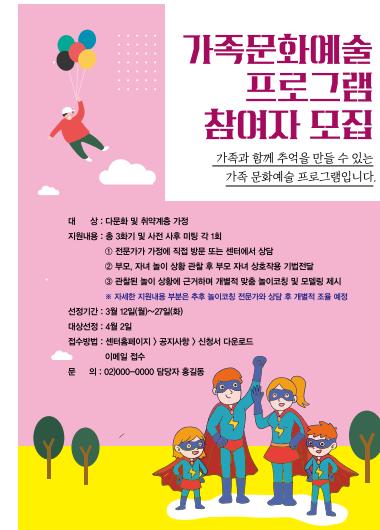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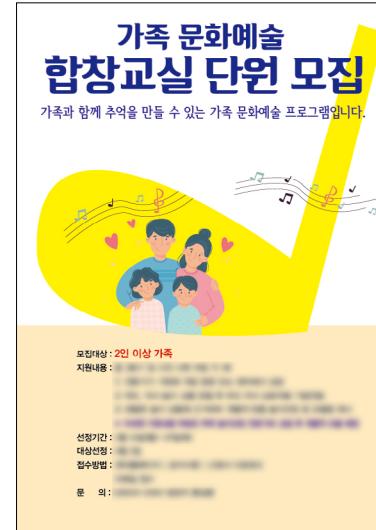
- 여성 어린이의 경우 모두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 아래 ‘좋은 예시’의 홍보물처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해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피부색 등 다채로운 문화적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어떨까요?



<좋지 않은 예시>

<좋은 예시>

5) 정상가족 개념을 강조한 홍보물



- 가족을 단위로 한 합창교실의 단원 모집 포스터입니다.

- 모집 대상에는 2인 이상 가족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미지에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정상가족’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대상을 표현하지 않고 배제하는 경우

- 재난 위기 시 대처 요령을 표현하면서 ‘국민행동요령’으로 기재하여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이주민이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기 시 ‘행동요령’으로 표현해도 의미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대상을 학교 재학생으로만 표시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연령 제한이 필요한 경우 12~18세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 이외 드라마와 공연 등에서 장애인, 아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고 다수자로만 구성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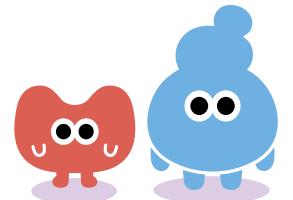


11) 출처: <https://blog.naver.com/koreamof/221418634062>

7)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변화시킨 홍보물



- ‘소외계층’이라고 낙인찍는 표현을 전면에 부각시켰던 사업의 변화 예시
-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 ⇒ 다양성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프로젝트’로 사업 명칭 변경
-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진행 할 때 여전히 ‘소외계층’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는 경우 발생)





9. 문화다양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1) 관련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http://www.i-eum.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https://cda.or.kr/>

2) 읽어볼 만한 자료

① 성소수자 관련 가이드라인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201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성소수자와 함께 평등한 일터 만들기〉(2018, 민주노총)
-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성소수자 부모 모임)
-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2018, SOGI 법정책연구회)
-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2017, 소수자인권난민 네트워크)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소수자 미디어 가이드라인〉(2018, 한국성적소수자문화 인권센터)

② 이주민 관련 가이드라인

- 〈방송 영상 제작자를 위한 미디어 속 다문화-모니터링 보고서〉(2013, 문화체육관광부)
- 〈제2차 이주민권 가이드라인〉(2020, 국가인권위원회)

③ 젠더 관련 가이드라인

- 〈예술계_내_행동강령〉(2019, 여성예술인연대, 페미플로어,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 및 실천요강〉(2018, 한국기자협회)
-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2017, 여성가족부)
-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 KTS〉(2020, KTS 워킹그룹)

④ 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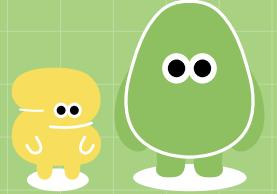
-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2020, 국가인권위원회)
- 〈혐오표현 리포트〉(2019, 국가인권위원회)

⑤ 장애 관련 가이드라인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2009, 국가인권위원회)
-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2012,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 먼저실천 100대 에티켓〉(201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장애 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201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동권 및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내서〉(2019, 한국장애인개발원UD환경팀)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7가지 약속¹⁾

1) 본 약속문은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전제로 작성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기획자, 예술가, 강사, 실무자 및 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약속문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도 진행 가능합니다.



-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이 다양성을 내다보는 열린 창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나이, 성, 종교, 출신 국가, 언어, 장애 여부 등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모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합니다.
- 우리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이 존중받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낄 때 그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우리는 가벼운 행동과 표현에도 누군가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침해하는 차별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이 다양성과 다른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 |
|------|--|
| 발행일 | 2021년 11월 30일 |
| 총괄 | 지역문화교육본부 본부장 송창진 |
| 기획총괄 | 예술교육팀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황연정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
| 만든이 | 이완, 안태호, 오혜민, 이정은, 차원, 최선영, 최준영 |
| 운영지원 | 예술교육팀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세연, 손주애 |
| 인쇄 | 문덕인쇄(주) |
| 디자인 | DFP 디자인 컴퍼니 |
| 교열 | 심영미 |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
| 주관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주소 | (11775)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15 3층,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 |
| 전화번호 | 031.853.9824-9832 |
| 홈페이지 | ggarte.ggcf.kr |

© 경기문화재단

본 저작물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